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 완화(안 제7조제5항)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 분의 75 이하로 완화함.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별 면적 제한 완화(안 제10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과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

도별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도록 면적 조건을 삭제함.

다.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수의계약 대상에 유턴기업 추가(안 제42조의3)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분의 1을”을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제10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3제3항제9호의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u>2분의 1</u> 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u>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도시첨단산업단지</u> : 다음	3. <u>도시첨단산업단지</u> : 시·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도 별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가.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삭 제>
4. (생략) ②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 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 내복귀기업-----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락처	(044) 201 - 3677